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관련요인 연구

이 현 민
(서울시립대학교)

김 욱 진*
(서울시립대학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에 대해 일인가구의 식품미보장 실태 및 식품미보장의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탐색적 차원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별 식품미보장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된 2013년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경험률은 7.1%로 국내 식품미보장 수준(2.6%)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일인가구 식품미보장과 높은 통계적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은 성별, 혼인상태, 자가보유, 소득수준이었으며, 경제활동과는 약한 관련성, 나이와는 아주 미약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무주택자, 경제활동 비참여와 같은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은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을 예측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이혼과 별거를 경험한 일인가구는 심리정서적 어려움뿐 아니라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식생활마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남성 일인가구인 경우 균형잡힌 식단의 식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심화될 수 있다. 넷째, 혼자 사는 노인이 식품미보장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현재의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식사지원 프로그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노인 일인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용어: 일인가구, 혼자 사는 사람, 식품미보장, 기본권 보장, 식품지원

* 교신저자: 김욱진, 서울시립대학교(kimwj0227@uos.ac.kr)

■ 투고일: 2015.4.30 ■ 수정일: 2015.8.15 ■ 게재확정일: 2015.8.26

I. 서론

일인가구란 통상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정의하는 일인가구는 혼자서 살립하는 가구로,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통계청, 2012)이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의 일인가구 현황(통계청, 2012)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일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가족관련 가치관의 변화, 평균 수명의 연장, 만혼, 이혼 증가와 같은 요인들이 가족구성에 변화를 일으키고, 일인가구가 급증하게 된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Belcher, 1967; Wall, 1989; Jiang & O'Neil, 2007). 이러한 일인가구 증가 현상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인가구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저출산, 고독사와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혼자 살면서 겪게 되는 일인가구의 심리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편견과 고립, 정신 및 신체적 건강 문제, 노후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의 문제,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각종 어려움에 마주하게 된다(Jamieson et al., 2001; 박정윤, 김진희, 2002; 정경희 등, 2012). 게다가 일반적으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구성을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보고 각종 세제, 주거혜택, 사회보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김주현, 송민경, 이현주, 2010; 반정호, 2012; 양정선, 2012; 정경희 등, 2012). 이러한 점은 일인가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적절히 충족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기본권 보장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식품미보장은 일인가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식품미보장(food insecurity)이란 “모든 국민/가족 구성원/개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심리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항상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김기량, 김미경, 신영진, 2008, p.388). 식품미보장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식품보장(food security)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며, 1996년 UN 세계식품정상회담(UN World Food Summit)에서 밝힌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Tarasuk, 2001; Coleman-Jensen, Nord,

& Singh, 2013). 이처럼 식품미보장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은 이것을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다. 국내 연구(김흥주, 이해진, 2010, p.476) 역시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욕구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은 먹거리 기본권을 정책화하는 사회보장의 한 영역이며, 공공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식품미보장은 빈곤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빈곤하지 않은 계층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남춘호, 2010; Carter, Lanumata, Kruse, & Gorton, 2010; Gundersen, Kreider, & Pepper,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식품미보장 예방 및 개선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더욱 중요해진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빈곤아동이나 독거노인의 결식 문제에 대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식사를 거른다는 문제를 넘어 기본적 권리 차원에서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간보장(human security) 문제라는 방향에서 식품미보장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아직까지 일인가구에 대한 공적 부문의 개입과 정책적 대응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사회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는 일인가구가 식품미보장과 같은 기본권 차원의 문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을 둘러싼 사회적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식생활 보장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첫째, 가구별 식품미보장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된 한국 복지패널 데이터를 통해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식품미보장의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탐색적 차원의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일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인가구가 경험하는 식품미보장에 대한 현황 및 관련요인 연구는 커다란 정책적, 학문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현황은 어떠한가?
2.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관련 요인은 무엇인가?

II. 문헌검토

1. 일인가구 정의 및 발생요인

통상적으로 일인가구와 독신가구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이 둘의 개념은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독신가구는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현재 비혼 상태인 즉, 법적인 배우자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양정선, 2012, p.126). 하지만 연구자가 강조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신가구 정의에 배우자와 별거인 상태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김년희와 채정숙(2005, p.7)은 독신가구를 자신이 가구주로서 공간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미혼이거나 결혼경험이 있더라도 이혼이나 사별, 별거 등으로 현재 홀로 살아가는 자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혼인상태 범주를 어떻게 반영했느냐에 따라 독신가구와 일인가구의 개념적 차이가 발생한다. 독신은 반드시 혼자서 가계를 꾸려나가거나 혼자서 생활해야 한다는 거주규정에는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은 채 현재 제도적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없다는 의미가 강하다(김혜영, 선보영, 진미정, 사공은희, 2007, p.25). 하지만 일인가구 정의에는 모든 유형의 혼인상태를 포함하여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도 일인가구는 일반가구 중에서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통계청, 2012). 따라서 일인가구¹⁾는 법적 배우자가 있더라도 동거하지 않거나 독립된 경제단위를 구성한 경우부터 이혼 등에 의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기러기 아빠나 주말부부 등처럼 가구구성원과의 별거에 의한 단독가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희연, 노승철, 최은영, 2011; 노명우, 2014)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라 본 연구는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고 생계를 꾸려 나가는 혼자 사는 사람을 일인가구로 규정하고 그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일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관심을 가지고 일인가구 구성의 다양한 요인을 검토한 Belcher(1967)는 일인가구 증가와 가장 관련성이 큰 것은 연령요인과 혼인상태라고

1) 이러한 지칭상의 개념 차이와는 별도로 정경희 등(2012, p.32)은 일인가구는 엄밀히 말하면 가구단위의 개념으로 가구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일인가구에 접근하고 있는 통계청의 각종 통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인구라는 측면에서 개인단위로 접근한다면 정확한 표현은 일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으로 일인가구 거주자라는 표현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였다. 연령 요인의 경우, 수명연장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가 기존의 보편적 가족구성 형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설명된다(Wall, 1989). 2000년 이후 10년간 우리나라 일인가구 성장패턴을 분석한 연구(이희연, 노승철, 최은영, 2011)에 따르면, 최고령층인 80세 이상의 노년층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증가 현상에 대하여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혼자 사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일인가구 현황과 특징을 연구한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2014)도 60대 이상의 일인가구가 가장 빠른 증가폭과 증가속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독신 및 가족구성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차경옥, 2006; 반정호, 2011)은 이혼의 증가, 결혼감소와 같은 혼인상태 요인이 기존의 보편적 가족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일인가구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희연, 노승철, 최은영(2011)은 2000년 이후 10년간 이혼에 의한 일인가구 증가율이 가장 컸고, 30~40대에서의 일인가구 증가는 미혼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2014)는 20~30대는 미혼으로 인한 일인가구가 대부분이고, 40~50대는 대규모 정리해고, 구조조정, 생산의 자동화 및 해외 이전으로 인해 삶의 재편을 경험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혼과 자녀 유학으로 인한 기러기 가족, 기타 이유로 비동거 상태인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 이혼 및 미혼의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가족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차경옥(2006)은 사회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으로 바뀌면서 전통적 가족 의미가 약해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연령과 혼인상태 요인과 더불어 우리나라 일인가구 증가현상은 경제적 여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연, 노승철, 최은영(2011)은 젊은 층의 일인가구 증가는 독신평조가 확산되어 자발적으로 나홀로 삶을 선택한 싱글족도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싱글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들(박정운, 김진희, 2002; 김혜영, 선보영, 진미정, 사공은희, 2007; 한혜진, 오은주, 정순희, 2014)도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청년실업 증가, 소득부족으로 인한 결혼지연, 높은 주거비, 외환위기 이후 사업실패와 실직으로 인한 비동거 가족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2. 일인가구의 취약성

가. 경제적 곤궁

대부분의 일인가구 연구에서 드러난 일인가구의 취약성은 경제적 곤궁이었다. 일인가구의 노후준비에 대해 연구한 한혜진, 오은주, 정순희(2014)는 일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하여 가족의 지지나 조언, 도움을 받기 힘들고, 세제혜택 면에서도 국가의 지원체제에서 소외되어 취약한 상황으로 경제적인 노후 준비가 그 어떤 가구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하여 소득 및 고용 불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일인가구 개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먼저, 성별요인과 관련해서 기존 연구들(Quintano & D'Aostino, 2006; De Vaus & Richardson, 2009;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 2014)은 일인가구 내에서의 여성 빈곤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연령 요인의 경우 노인 독신가구가 각종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이 크고 빈곤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년희, 채정숙, 2005; Jiang & O'Neil, 2007). 혼인상태 측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살펴보면, 먼저 비혼 일인가구는 경제적 불안감과 노후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선보영, 진미정, 사공은희, 2007), 독신가족은 또래의 결혼생활을 하는 기혼자에 비하여 평균소득이 낮아 독신생활 유지에 경제적인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박정윤, 김진희, 2002)고 한다. 이혼과 관련하여 전업주부였던 경우 이혼 후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에 속하게 되며(Jamieson et al., 2001; 차경욱, 2006), 신민경(2014)은 이혼 일인가구 집단이 금융부채비중에서 중간위험집단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Quintano와 D'Aostino(2006)는 일인가구 결혼상태에 따른 빈곤율 변화와 관련하여 노년세대의 이혼은 빈곤율을 증가시키지만 젊은 세대의 이혼은 빈곤율을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인가구 소득과 관련하여 반정호(2011)는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소득으로 비교했을 때 일인가구의 소득수준은 다인가구의 소득수준의 60%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2014)는 일인가구 중 50.8%가 한 달 수입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며, 27.1%가 한 달 수입 100~200만원 사이의 차상위 계층에 속한다고 하였다.

주택보유와 관련해서 Bennet과 Dixon(2006)은 일인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등의 신청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기도 하여 일인가구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인가구 재무특성을 연구한 신민경(2014)은 일인가구의 자가거주율이 낮았고, 비취업자가 43.2%로 주거 상태 및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밝혔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본적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경제적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수 밖에 없다(한혜진, 오은주, 정순희, 2014). 하지만 기존 문헌에서 확인했듯이 일인가구는 각종 경제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고용 및 주거면에서도 불안정한 총체적 생활불안정 문제에 놓여있다. 더욱이 일인가구는 가족을 형성하고 있지 않아 각종 복지혜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양정선, 2012; 정경희 등, 2012),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기 어려워져 기본권 보장마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나. 심리사회적 부적응

혼자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일인가구에게는 경제적 곤란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어려움도 함께 도사린다. 박정윤과 김진희(2002)는 독신가족은 가족이나 주변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주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힘들고, 혼자라는 외로움의 심리적 문제들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2014) 역시 일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하여 우울감, 외로움, 고립감, 슬픔을 느끼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특히 식생활 영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가 관찰된다고 하였다. 자녀교육 등을 위해 따로 살고 있는 기러기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하여 질적연구를 시도한 김주현, 송민경, 이현주(2010)의 연구도 기러기 아빠들이 혼자 살게 되면서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적절한 점검과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이혼과 사별은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며, 갑작스럽게 일인가구를 형성한 경우 자신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다는 불안감, 배우자 부재로 인한 절망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적응(Jamieson et al., 2001; 박정윤, 김진희, 2002; 차경옥, 2006)을 경험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일인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사회적 낙인(Jamieson et al., 2001; 박정윤, 김진희, 2002)으로 고통 받기도 한다. 사회적 고립과 관련하여 Hughes와 Gove(1981)는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고립적이고

사회적 상호작용도 적다고 보기 쉬우며, 사회적 연결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비혼 일인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아프거나 위급시 대처의 어려움이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이럴 때 주위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김혜영, 선보영, 진미정, 사공은희, 2007). 이 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범죄에도 취약하기도 하다는 안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Bennett & Dixson, 2006; 정경희 등, 2012).

요컨대, 일인가구는 우울, 고독, 고립 등의 심리사회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심리정서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족 내에서 담당하는 가족복지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고, 일인가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박정윤, 김진희, 2002;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 2014) 사적 및 공적 영역에서 모두 그들의 복지욕구는 충족되기 어렵다.

3. 식품미보장 개념

식품미보장 연구는 식품미보장이 식품부족을 겪는 저개발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선진 국가들에서도 식품박탈과 식량결핍의 문제가 있다(Rose, Gundersen, & Oliveira, 1998; Tarasuk, 2001; Wu & Schimmele, 2005; Temple, 2008; Shepherd, 2012)는 사실에 주목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식품미보장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로 배고픔(hunger)과 식품불충분성(food insufficiency)이 있다. 배고픔은 식품부족으로 인한 배고프다는 주관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배고픔이라고 일컬어지는 가구 식품미보장은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여 식품에 안전하거나 적절히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Loopstra & Tarasuk, 2012). 식품불충분은 사회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식을 사거나 획득할 돈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식품미보장이 식품불충분 개념을 포괄하고 있어 서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Wu & Schimmele, 2005). 본 연구도 두 가지 용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함께 검토하였다.

식품미보장 연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식품미보장 정의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의 정의이다(Barrett, 2010). FAO는 식품보장이란 “모든 사람들이 항상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식이 욕구와 식품

선호도를 충족시키는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품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성을 갖추었을 때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FAO, 2013, p.50). 식품미보장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 중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개발했다고 평가받는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정의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정의이다. 여기서는 식품미보장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해 충분한 양질의 식품에 대한 접근이 결여된 상태(Chilton & Rose, 2009)”로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식품에 대한 양적, 질적 차원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충분한 식품은 양적인 면을,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품은 질적인 면을 나타낸다(Tarasuk, 2001; Wu & Schimmele, 2006).

한국형 식품미보장 척도 개발 연구를 한 김기량, 김미경, 신영전(2008, p.388)도 USDA와 FAO의 정의를 토대로 식품보장이란 “모든 국민/가족구성원/개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사회심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항상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식품미보장은 “충분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사회심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항상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식품에 대한 유용성, 가용성, 접근성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이용성 측면을, 충분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품은 유용성 측면을, 사회심리적으로 수용가능한 방법으로 항상 확보하고 있는 상태는 접근성 측면을 강조한다(김기량, 김미경, 신영전, 2008, p.270).

또한, Campbell(1991)은 식품미보장은 단순히 영양상태를 기술해주는 척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건강상태를 예측해 주는 변수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식품미보장은 식품미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사회적, 육체적 결과까지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Loopstra & Tarasuk, 2013). 식품미보장을 지역사회 수준에서 접근한 김옥진(2013, p.2)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밥 먹는 것과 관련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음식을 불충분하게 섭취함으로써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노출된 인구”를 식품미보장을 경험하는 인구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고립, 참여적 속성과 식품미보장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식품미보장은 식품에 대한 양적, 질적인 문제와 유용성, 접근성, 이용성의 차원을 고려하고, 식품미보장으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육체적 결과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2) FAO의 식품미보장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음식을 구하지 못했을 때라는 경제적인 문제로만 한정하였고, 식품미보장의 주체가 수동적이며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Shepherd, 2012)이 있기도 하다.

4. 식품미보장 관련 요인

가. 경제적 요인

기존 연구들(Rose, Gundersen, & Oliveira, 1998; Carter, Lanumata, Kruse, & Gorton, 2010; Coleman-Jensen, Nord, & Singh, 2013; Martin-Fernandez et al., 2013)에 따르면, 소득, 자가소유여부, 고용상태 등의 경제적 요인이 식품미보장과 강한 관련성을 보인다고 한다. 미국의 식품미보장 결정요인을 연구한 Rose, Gundersen, Oliveira(1998)는 소득과 자가소유 여부는 식품불충분의 강한 예측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교외지역 식품미보장 수준을 검토한 Ramsey, Giskes, Turrell, Gallegos(2012)도 낮은 소득수준이 식품미보장에 높은 위험성을 보인다고 했으며, 사회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식품미보장 실태를 연구한 Nolan, Rikard-Bell, Mohsin, Williams(2006)도 식품미보장이 가구주의 저축능력과 강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호주에서도 식품미보장을 경험하기 쉬운 집단은 실직자, 임대주택 거주자라는 연구결과가 있다(Roiser, 2011). 또한, Loopstra와 Tarasuk(2013)는 식품미보장 수준의 변화에 가구의 소득 및 고용상태 변화가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고용과 관련된 결과 중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육체노동자일수록 식품미보장 위험이 크다(김기량, 김미경, 신영전, 2009; Carter, Lanumata, Kruse, & Gorton, 2010; Martin-Fernandez et al., 2013)는 내용이 있다. Temple(2008)은 고소득, 고용상태, 자가소유와 같은 경제적 요인들은 식품미보장의 보호요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요인이 식품공급 및 접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해고, 이혼, 사망 혹은 질병 등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도래했을 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장애인의 식품미보장과 경제적 자원의 관련성 연구를 한 Huang, Guo, Kim(2009)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높은 빈곤율과 낮은 고용율, 그리고 높은 건강 관련 소비율에 주목하여 식품미보장 현황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은 소득보다 자산이 식품미보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더욱 효율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경제적인 요인이 식품미보장에 강력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만, 빈곤한 사람이 모두 식품미보장 상태인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비빈곤 가구에서도 식품미보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남춘호, 2010; Carter, Lanumata, Kruse, & Gorton, 2010; Gundersen, Kreider, & Pepper, 2011). Gundersen, Kreider, Pepper(2011)는 식품미보장을 나타내는 수치가 비교적 낮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나. 인구사회적 요인

성별과 관련하여 Carter, Lanumata, Kruse, Gorton(2010)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식품미보장률이 더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김기량, 김미경, 신영전(2008), 김기량, 김미경, 신영전(2009), 남춘호(2010), Coleman-Jensen, Nord, Singh(2013)의 연구도 여성, 한부모 여성, 여성가구주, 독신여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 식품미보장에 더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령의 경우, 젊은 층이 식품미보장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Carter, Lanumata, Kruse, & Gorton, 2008; Roiser, 2011)는 것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식품미보장 위험이 줄어든다는 분석결과(Rose, Gundersen, & Oliveira, 1998; Temple, 2008)가 있었다. 김기량, 김미경, 신영전(2009)의 연구가 노인을 식품미보장에 노출된 집단으로 특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혼인상태의 경우, 미혼인 경우가 식품미보장 위험이 높았으며(Carter, Lanumata, Kruse, & Gorton, 2008), 결혼한 상태가 식품미보장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Temple, 2008)가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연구(남춘호, 2010)도 이혼, 별거 등의 무배우자가 식품미보장 위험에 특히 많이 노출된다고 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Rose, Gundersen, & Oliveira, 1998; 김기량, 김미경, 신영전, 2009; 남춘호, 2010)가 공통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식품미보장 위험이 더 크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과 관련하여 미국 식품미보장 현황 연구(Coleman-Jensen, 2013)는 대도시와 시골이 교외지역보다 식품미보장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프랑스 식품미보장 결정요인 연구(Martinez-Fernandez et al., 2013)는 지역불평등 변수를 함께 검증하였는데, 연구결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식품미보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노동자 계층 지역, 중상층 이상 지역 순으로 식품미보장이 낮게 나타났다. 호주 시드니의 사회적 불리지역 식품미보장 연구(Nolan, Rikard-Bell, Mohsin, & Williams, 2006)는 식품 접근성 측면에서 식품구입처에 찾아갈 능력과 식품구입 및 요리를 위한 시간적 여유도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식품구입처를 찾아가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 중 37.9%가 식품미보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김기량, 김미경, 신영전, 2009; 남춘호, 2010) 결과에서 장애가 심할수록, 장애가 있는 사람일수록 식품미보장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식품미보장을 경험하기 쉬운 집단을 찾는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들(Rose,

Gundersen, & Oliveira, 1998; Nolan, Rikard-Bell, Mohsin, & Williams, 2006; Temple, 2008; Carter, Lanumata, Kruse, & Gorton, 2010; Martin-Fernandez et al., 2013; Coleman-Jensen, Nord, & Singh, 2013)은 가구구성 형태를 중요한 변수로 검토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가 분석한 가구구성 형태 중에서 일인가구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2013년 가구 식품미보장 현황 보고서(Coleman-Jensen, Nord, & Singh, 2013)에서 나타난 가구구성에 따른 식품미보장 현황은 배우자 없는 여성가구의 식품미보장이 35.4%로 가장 높았고, 혼자 사는 여성은 15.3%, 혼자 사는 남성은 14.7%, 고령일인가구는 9.1%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식품미보장 결정요인 연구(Carter, Lanumata, Kruse, & Gorton, 2010)는 일인가구의 식품미보장 경험률은 18.1%로 2인 이상 가구, 기타 다가구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Martin-Fernandez 등(2013)은 고소득 가구내에서 가구구성이 식품미보장과 강한 관련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싱글 가구가 비교집단에 비하여 식품미보장에 더욱 위험하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김기량, 김미경, 신영진, 2009)는 독거노인을 식품미보장에 취약한 집단으로 밝히고 있다.

이상의 국내외 식품미보장 관련 요인 연구에서 검토한 경제적 요인 및 비경제적 차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토대로 국내외의 기존 연구에서 관련 있는 요인들로 드러난 변수들을 재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변수를, 사회학적 요인으로 교육수준, 거주지역, 장애유형 변수를,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활동참여, 주택보유, 소득수준 변수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5.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일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식품미보장 관련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일인가구의 식품미보장을 검토한 연구는 없었다. 하지만 일인가구의 식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외의 경우, 독신에서 동거 혹은 결혼으로 혼인상태를 전환한 사람들의 식생활 활동 변화를 탐구한 연구(Kremmer, Anderson, & Marshall, 1998)와 도시 아파트 거주 독신 남성 식생활 결정 요인 연구(Marquis & Manceau, 2007)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두 연구는 인터뷰와 함께 진행된 질적연구로 혼자 먹던 것에서 함께 먹는 것의 의미를 탐색하거나, 남성의 식사패턴을 분석하여 식품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식생활과 관련하여 일인가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이신숙과 김성희(2011)의 전라남도 농어촌 독거노인의 결식 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독거노인이 하루에 한 끼나 이상 거르고 있었으며, 88.4%의 독거노인이 거의 매번 혼자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양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광주광역시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 여성 독거노인들의 일상생활 연구(박미정, 2010)는 그들의 삶에 대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과 지리적으로 고립된 공간에서 배달된 도시락으로 굶주림을 채우는 정도의 식생활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들 국내 연구는 모두 한정된 지역의 특정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인가구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의식주와 관련하여 기본적 욕구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일인가구의 주거실태를 주거권 관점에서 시도한 연구(김옥연, 문영기, 2009)가 있었다. 경제적 취약성을 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일인가구 특성상 일인가구의 주거복지에 관한 여러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식품미보장과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다만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식생활 영역을 강조한 일부 연구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정을 대상으로 식품보장 연구를 한 오세영, 김미연, 홍민지, 정해랑(2002)은 식생활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만큼 식생활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라는 점을 밝혔으며,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식품미보장 경험 연구를 한 정정호(2012) 또한 우리나라에서 빈곤층의 식생활 경험은 영양학 및 보건의 측면에서만 주로 논의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빈곤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 속에서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상의 일인가구와 식품미보장 관련 기존 문헌을 검토한 결과,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헌상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일인가구의 여러 기본적 사회미보장의 한 양태인 식품미보장의 현황을 알아보는 한편, 그 관련 요인을 살피는 데 주력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3년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가구단위로 이루어지는 전국 규모의 대표적인 패널조사 중 하나로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이현주 등, 2013). 또한, 복지패널 자료에는 2008년도부터 식품보장 항목이 추가되어 가구별 식품미보장 상태를 측정하고 있다(김기량, 김미경, 2009).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는 원표본 5,104 가구에 기존 신규가구와 올해 발생한 추가 신규가구를 포함한 515 가구, 신규 조사대상 가구 1,693 가구까지 총 7,312 가구가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가구용 자료에서 가구원1에 응답한 사람, 즉 가구형태에서 단독 가구로 응답한 20세 이상 일인가구 2,000명을 선별하였다. 최종분석에는 표준 가중치를 적용한 일인가구 1,853명을 분석하였다.

2. 변수

가. 응답변수

본 연구의 응답변수는 식품미보장 경험여부이다. 한국복지패널의 식품보장 척도는 타당성이 검증된 미국 간략형 식품보장 서베이 모듈(6 Items Short-form US Household Food Security Survey Module)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한 한국형 식품보장 측정도구(Korean Household Food Security Survey Module, K-HFSS)를 사용하고 있다(김기량, 김미경, 신영진, 2009, p.269). 식품보장 상태의 측정은 1)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살돈이 없었는지, 2)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는지, 3)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걸렀는지, 4) 그러한 경우의 경험 개월 수, 5)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먹었는지, 6)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 배가 고프는데도 먹지 못했는지의 총 6가지 질문에 대해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회상하여 응답하게 되어 있다.

김기량, 김미경, 신영전(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대로 1)과 2)의 응답에서 자주 그렇다와 가끔 그렇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0점을 3), 5), 6)의 응답에서 그렇다는 1점, 아니다는 0점을 4)의 응답에서 거의 매일, 몇 개월 동안은 1점, 1~2개월 동안은 0점을 부여하였다. 이들의 총 합산 점수는 6점이 되며, 총점 1점 이하는 식품미보장 상태인 식품미보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으로, 2점 이상은 식품미보장을 경험한 집단으로 이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값(Cronbach's alpha)이 .753으로 사용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나. 설명변수

선행연구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설명변수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변수를 사용하였다. 사회학적 요인은 지역, 교육수준, 장애여부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경제학적 요인은 경제활동 참여상태, 자가보유여부, 소득수준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총 9개 설명변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구학적 요인에서 성별은 여성과 남성으로, 나이의 경우 출생연도 변수를 활용하여 먼저 나이로 환산한 후, 65세 이상 노인과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비노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이 식품미보장에 취약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김기량, 김미경, 신영전, 2009; 남춘호, 2010)를 토대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집단과 비노인집단을 구분하였다. 혼인상태는 통계청(2012)의 일인가구 현황에서 2000년 이후 10년간 가장 증가폭이 컸던 이혼/별거를 하나의 집단으로 하고, 이혼/별거와 비교할 수 있는 집단으로써 미혼, 사별, 유배우를 이혼 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사회학적 요인의 거주지역은 지역규모별로 구분된 지역 변수를 활용하여 서울, 광역시, 시에 해당하는 것을 도시로, 군과 동농복합군은 농촌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학 이상으로, 무학을 포함하여 초등, 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졸 이하로 분류하였다. 장애여부는 장애유형 변수에서 비해당으로 응답한 경우를 비장애, 16가지 장애유형 중 하나로 응답한 경우를 장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경제적 요인 관련 변수의 경제활동은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문항에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고용주, 자영업자는 경제활동 참여로,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

활동 비참여로 구분하였다. 자가보유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 변수에서 자가를 보유한 것으로 응답한 경우는 자가로,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로 응답한 경우는 비자가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일인가구 소득수준은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구분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 변수는 중위 균등화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명변수들은 모두 이항범주형 변수들로서, 기준집단에는 1을, 비교집단에는 2의 값을 부여하는 식으로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완료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변수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정의

구분		변수명	정의	
반응변수		식품미보장	식품보장 =0	식품미보장 =1
설명변수	인구	성별	여자 =1 ^a	남자 =2
		나이	65세 미만 =1 ^a	65세 이상 =2
사회	사회	혼인상태	이혼 외 =1 ^a	이혼/별거 =2
		교육수준	대학 이상 =1 ^a	고졸 이하 =2
		거주지역	도시 =1 ^a	농촌 =2
		장애여부	비장애 =1 ^a	장애 =2
경제	경제	경제활동	참여 =1 ^a	비참여 =2
		자가보유	자가 =1 ^a	비자가 =2
		소득수준	일반 =1 ^a	저소득 =2

주: ^a는 기준집단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PASW Statistics 18.0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현황과 관련요인을 탐색하려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표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의 분석절차를 따랐다. 먼저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경험 현황을 파악하고자 기본적인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식품미보장 경험여부에 따른 분석대상의 인구, 사회, 경제학적 요인별 특성의 차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인가구의 인구, 사회, 경제학적 특성 중에서 식품미보

장과 관련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식품미보장 경험여부를 반응변수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인가구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일인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여성 일인가구가 1,228명(66.3%)로 남성 625명(33.7%)에 비하여 약 두 배 정도 많았다. 나이의 경우, 65세 이상 일인가구가 949명(51.2%)로 전체 일인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혼인상태의 경우 이혼 및 별거 상태인 일인가구는 379명(20.5%)이었으며, 그 외 미혼, 사별, 그리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득이 따로 살고 있는 유배우에 해당하는 일인가구는 79.5%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가 1,404명(75.8%), 대학교 이상이 449명(24.2%)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훨씬 적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광역시, 시에 해당하는 도시 거주 일인가구가 대부분으로 1,624명(87.6%)을 차지하였으며, 군과 도농복합군에 해당하는 농촌 거주자는 229명(12.4%)이었다. 장애가 있는 일인가구는 254명(13.7%)로 나타났으며, 장애가 없는 경우는 1,599명(86.3%)이었다. 일인가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895명(48.3%),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958명(51.7%)으로 약 절반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자가보유의 경우, 자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일인가구는 567명(30.6%)이었으나, 전월세 거주 일인가구는 1,286명(69.4%)로 나타나 자가 비율이 비자가 일인가구의 1/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일인가구의 소득수준은 균등화소득에 따른 구분에서 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1,011명(54.6%)로 그렇지 않은 경우 842명(45.4%)보다 약 10% 정도 더 높았다.

표 2. 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인구	성별	여자	1,228	66.3
		남자	625	33.7
	나이	65세 미만	904	48.8
		65세 이상	949	51.2
	혼인상태	미혼·사별·유배우	1,473	79.5
		이혼·별거	379	20.5
사회	교육수준	대학 이상	449	24.2
		고졸 이하	1,404	75.8
	거주지역	농촌	229	12.4
		도시	1,624	87.6
	장애여부	비장애	1,599	86.3
		장애	254	13.7
경제	경제활동	참여	895	48.3
		비참여	958	51.7
	자가보유	자가	567	30.6
		전월세 등	1,286	69.4
	소득수준	일반	842	45.4
		저소득	1,011	54.6
		계	1,853	

2.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현황

일인가구 특성에 따른 식품미보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거주지역을 제외한 성별, 나이, 혼인상태, 교육수준, 장애여부, 경제활동, 자가보유, 소득수준 요인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 각 변수 간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할 수 있었다.

전체 일인가구의 식품미보장 경험률은 7.1%이었다. 각각의 특성별로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인구학적 요인에서 식품미보장을 경험한 남성은 9.3%였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일인가구는 9.1%가 식품미보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혼인상태에 따른 식품미보장은 이혼 및 별거인 일인가구가 15.5%로 이혼 외 상태인 경우(5.0%)보다 약 3배 정도 높았다. 사회학적 요인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식품미보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8.7%였으며, 농촌 거주 일인가구의 경우 식품미보장률이 5.2%, 도시 거주 일인가구는 7.4%로 둘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장애여부에 따라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15.4%로 비장애인(5.8%)에 비하여 식품미보장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경제학적 요인에서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따른 식품미보장은 참여 3.6%, 비참여 10.4%로 비참여자가 약 3배 경험비율이 높았으며, 자가보유 일인가구(2.5%)에 비하여 전월세 거주 일인가구는 식품미보장인 경우가 9.2%로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의 경우 저소득층 식품미보장은 118명(11.7%)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1.7%)에 비하여 약 10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일인가구 중에서 식품미보장을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집단은 남성, 노인, 이혼/별거자, 고졸이하 학력자, 장애인, 경제활동 비참여자, 전월세 거주자, 저소득층이었다. 이러한 현황은 일인가구 내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서 식품미보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표 3. 조사 대상자 식품미보장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식품미보장	χ^2
인구	성별	여자	1,228	74(6.0)	6.629**
		남자	625	58(9.3)	
	나이	65세 미만	904	46(5.1)	11.049**
		65세 이상	949	86(9.1)	
	혼인상태	이혼 외	1,473	73(5.0)	51.014***
이혼·별거		380	59(15.5)		
사회	교육수준	대학 이상	449	10(2.2)	21.474***
		고졸 이하	1,404	122(8.7)	
	거주지역	농촌	230	12(5.2)	1.442
		도시	1,623	120(7.4)	
장애여부	비장애	1,600	93(5.8)	30.446***	
	장애	253	39(15.4)		
경제	경제활동	참여	895	32(3.6)	32.941***
		비참여	958	100(10.4)	
	자가보유	자가	568	14(2.5)	26.832***
		비자가	1,286	118(9.2)	
	소득수준	일반	842	14(1.7)	69.560***
저소득		1,011	118(11.7)		
계			1,853	132(7.1)	

주: *** $p < .001$ ** $p < .01$ * $p < .05$

3.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의 관련요인

일인가구의 인구, 사회, 경제학적 특성이 식품미보장 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밝혀내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분류의 정확도는 전체적으로 92.9%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반응변수 그룹으로 잘 판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가구 식품미보장과 통계적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성별, 혼인상태, 자가보유, 소득수준이었으며, 교육수준, 거주지역, 장애여부는 일인가구 식품미보장과 별다른 통계적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경제활동과는 약한 관련성, 나이와는 아주 미약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요인에서 저소득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하여 식품미보장 발생 위험성이 약 6배($OR=6.024, p=0.000$) 높았고, 전월세 거주자는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비하여 식품미보장 발생 위험도가 약 4배($OR=3.676, p=0.00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학적 요인에서 이혼 및 별거인 일인가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식품미보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약 3배($OR=3.115, p=0.000$) 높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식품미보장을 경험할 위험성은 약 2배($OR=2.358, p=0.000$)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적으로 약한 관련성을 나타낸 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 비참여자가 경제활동 참여자에 비하여 약 1.6배($OR=1.640, p=0.045$) 정도 식품미보장 발생 위험도가 높았고, 노인 일인가구는 비노인 일인가구에 비하여 약 1.5배($OR=1.497, p=0.8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무주택자이면서 동시에 소득수준이 낮은 이혼한 남성 혹은 별거 중인 남성 일인가구가 식품미보장 위험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향후 일인가구의 식품관련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은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획,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조사 대상자 식품미보장 관련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 E.	OR	P	
인구	남성	.858***	.215	2.358	.000
	65세 이상	.403 [†]	.231	1.497	.081
	이혼·별거	1.136***	.209	3.115	.000
사회	고졸 이하	.475	.374	1.608	.205
	도시 거주	.484	.338	1.623	.152
	장애	.374	.230	1.453	.103
경제	경제활동 비참여	.495*	.246	1.640	.045
	전월세 등 비자가	1.302***	.300	3.676	.000
	저소득 가구	1.796***	.331	6.024	.000
상수항	-7.069***	.608	.001	.000	
모형 분류 정확도		92.9%			
-2LL		767.889			
모형의 카이제곱		183.540*** (df=9)			

주: 1)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2) 비교집단: 여성, 65세 미만, 이혼 외, 대졸이상, 농촌거주, 비장애, 경제활동 참여, 자가보유, 일반가구

V. 결론 및 제언

일인가구는 향후 그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정책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일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관련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식품미보장은 인간의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일인가구의 식품미보장 현황과 관련 요인에 대하여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경험률은 7.1%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3년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전체 가구 식품미보장률 2.6%(본 연구 자체분석, 표 미제시)에 비하여 4.5%포인트의 차이를 보인다. 지난 2008년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토대로 수행된 선행 연구(김기량, 김미경, 신영전, 2009; 남춘호, 2010)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식품미보장

수준이 약 5.4%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08년 이후 5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볼 때, 2013년도의 전체 가구 식품미보장률이 2008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2013년 현재 일인가구의 식품미보장률이 7.1%라는 연구 결과는 일인가구가 경험하는 식품미보장이 전체 일반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식품보장에 대한 사회정책적 함의가 있는 주목할 만한 발견이라 하겠다.

둘째,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에는 소득수준, 자가보유여부, 경제활동, 혼인상태, 성별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 무주택, 경제활동 비참여와 같은 경제적 취약성이 일인가구의 식품미보장을 예측하는 데 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적 요인이 식품미보장 예측에 중요하다고 보고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일치된 결론(Rose, Gundersen, & Oliveira, 1998; Carter, Lanumata, Kruse, & Gorton, 2008; 남춘호, 2010)이 일인가구를 대상으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과로, 저소득자, 무주택자, 경제활동 비참여자의 비율이 특히 높은 국내 일인가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Martin-Fernandez 등(2013)에 따르면, 갑작스런 경제적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받기 쉬운 취약계층은 사회적으로 식품관련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식품미보장의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경제적 환경 변화란 실직, 고용중단의 지속, 소득의 감소 및 중단뿐 아니라 인간 삶의 기본적 터전이 되는 주거의 불안정을 포괄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이와 같은 불리한 경제적 여건 하에서 일인가구의 식품미보장 경험률이 증가하기 쉬우며, 그로 인해 기본권의 박탈, 인간다운 삶의 영위 불가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이혼/별거 상태인 일인가구가 식품미보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이혼과 별거를 경험한 경우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식생활마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존 문헌(Jamieson et al., 2001; 박정윤, 김진희, 2002; 차경옥, 2006; 신민경, 2014)은 이혼/별거를 경험한 일인가구에 대하여 경제적 곤궁이나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일인가구의 경우, 이혼과 별거는 단순히 가족의 해체나 경제적 손실, 심리적 차원의 트라우마 발생, 그에 따른 심리적 위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충족 영역에 속하는 식품보장, 구체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충분한 영양 공급'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괴적 이벤트로 발전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인가구의 식품미보장 문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 실천적 개입의 영역으로 끌어들

이고 이슈화할 필요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미보장 위험도가 큰 일인가구주의 성별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식품미보장 관련 선행연구(Carter, Lanumata, Kruse, & Gorton, 2008; 김기량, 김미경, 신영전, 2008; 김기량, 김미경, 신영전, 2009; 남춘호, 2010; Coleman-Jensen, Nord, & Singh, 2013)에서 여성, 한부모 여성, 여성가구주, 싱글 여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식품미보장에 취약하다고 밝힌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혼자 사는 남성이 식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일부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국내 고독사 연구(김혜성, 2014)는 40~50대 중년 남성이 고독사의 위험이 큰 집단임을 밝히고, 남자들이 사교성이 떨어지고 혼자 살면서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비슷하게 국외 싱글 남성의 식생활 연구(Marquis & Manceau, 2007)도 남자들이 영양학적 섭취방법 및 조리방법 등의 무지로 인해 식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본 연구가 타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지 않고 통제변수를 적용하지 않아 단순히 혼자 사는 남성이 식품미보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만으로 성별 요인의 영향 자체를 설명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혼자 사는 남성이 요리 능력 및 식품 관련 접근성이 떨어져 제대로 균형잡힌 식단의 식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심화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심층 분석과 혼자 사는 여성 등의 비교 대상 확대를 통하여 후속 논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나이는 식품미보장과 관련성이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 수록 국가의 사회적 보장을 받게 되고 전반적인 생활경비가 줄어들어 식품미보장 위험이 크지 않다는 국외 연구(Temple, 2008)와 달리, 국내 연구는 노인이 식품미보장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식품지원도 노인가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노인이 신체적으로 비노인보다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을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 결과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 현재의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지원 프로그램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김기량, 김미경, 신영전(2009)의 연구 또한 노인가구의 식품미보장률이 높은 이유는 식품미보장 상태인 노인가구가 적절한 식품관련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혼자 사는 노인이 식품미보장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만은 없으므로 현재 독거노

인만을 대상으로 한 식사지원 프로그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노인 일인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각 변수 간의 상호작용 및 전후 영향 요인까지 다각도로 고려하지 않았고, 연령 변수도 노인과 비노인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고 있어 나이와 식품미보장과의 미약한 연관성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65세 미만인 비노인 일인가구의 식품미보장 경험률은 5.1%로 2013년도 한국 복지패널 데이터의 국내 식품미보장 수준인 2.6%보다 높았다. 이것은 비고령 일인가구 또한 식품미보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식품미보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던 저학력, 거주지역, 장애 변인은 조사 결과 일인가구의 식품미보장과는 큰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변인을 시간적 변화, 경제적 여건 변화나 관련 요인 간의 상호작용 등과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변수들과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의 낮은 연관성에 대한 최소한의 의미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가운데 식품미보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학력보다는 소득수준이고, 둘째, 일인가구가 소비하는 먹거리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충분한 공급은 현재 국내의 경우 도농격차가 크지 않으며, 셋째,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충분한 식품을 확보하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애당초 일인가구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식품지원 대상자 선정 시 무주택자이면서 동시에 소득수준이 낮은 이혼한 남성 일인가구 집단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인가구 식품관련 지원은 노인 대상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등이 있다(김홍주, 이해진, 2010). 하지만 지원 대상이 취약노인에 한정되어 있고 단순적인 지원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일인가구의 경우 비노인 집단에서도 식품미보장은 거의 동일한 비율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단순히 연령에만 초점을 맞춰 취약 독거노인들에게만 식품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정책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일인가구의 식품미보장은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수준이 낮고 이혼한 남성 집단에서의 발생 위험이 더 크므로, 이에 맞춰 현재의 단편적인 취약노인 대상 식사지원에서 벗어나 여러 인구나

회화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식품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양적, 질적으로 확장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식품지원 프로그램에 이혼/별거를 경험한 일인가구와 남성 일인가구와 같은 개별 특성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식품미보장은 단순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결과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김옥진, 2013; Loopstra & Tarasuk, 2013)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즉, 개인의 문제를 밖으로 표출하기 힘든 남성 일인가구나 이혼/별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식품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식품지원 서비스처럼 단순히 식사지원을 끝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혼/별거 상태의 일인가구 및 남성 일인가구를 대상으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짜는 요령, 영양가를 보존하면서 안전하게 식자재를 조리하는 방법, 조리한 요리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안정된 환경에서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습관 등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총체적 차원의 식품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예방 및 개선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일인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Temple, 2008; Martin-Fernandez et al., 2013)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식품미보장이 경제적인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인가구 내 취약한 집단의 주거 및 고용 관련 지원은 장기적으로 식품미보장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인가구는 사회적으로도 보편적 가구 구성의 형태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사회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할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현실까지 더해져, 일부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미약한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인가구를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서 이해하고 기본적 보장 체계를 개선해나감과 동시에 일인가구의 주거 문제 및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인가구의 식품미보장 예방 및 완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에 주목하여 그 현황과 관련 요인을 밝혀내는 탐색적 차원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일인가구 식품미보장과 관련된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정책 입안자들과 프로그램 기획자들이 복지 욕구 충족이 시급한 집단의 정책 및 지원 개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간결한 분석틀로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 방법이 기본적 차원에 그치고 요인 간 전후 영향요인 및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하지 못해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둘째, 일인가구가 식품미보장의 위협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일인가구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리기 위한 연구로 일인가구의 식품미보장 원인과 결과적 측면인 삶의 질이나 건강과 관련된 측면,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자원, 즉 지역사회 자원, 원 가족 및 주변 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제시된 식품의 공급성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식품미보장 척도가 정해진 기간의 식품미보장을 질문하고 있어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도 자료의 제약상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일인가구의 개인 자원, 가족 자원, 지역사회 자원을 고려한 식품미보장의 시간적 변화 추적 연구를 제안한다.

이현민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일인가구, 삶의 질,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복지이다.

(E-mail: objection@hanmail.net)

김옥진은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시민참여, 사회적 자본, 자원봉사이다.

(E-mail: kimwj0227@uos.ac.kr)

참고문헌

- 김기량, 김미경. (2009). 식품보장 측정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4(2), pp.374-385.
- 김기량, 김미경, 신영전. (2008). 식품보장의 개념과 측정. *예방의학회지*, 41(6), pp.387-396.
- 김기량, 김미경, 신영전. (2009). 한국 식품미보장 현황 및 특성. *보건사회연구*, 29(2), pp.268-292.
- 김년희, 채정숙. (2005). 독인가구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 pp.85-103.
- 김옥연, 문영기. (2009). 1인가구 주거실태 분석 -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7(2), pp.37-53.
- 김옥진. (2013). 지역사회 참여적 속성이 사회적 고립과 식품미보장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층분석. *사회보장연구*, 29(1), pp.1-32.
- 김주현, 송민경, 이현주. (2010). 기러기아빠의 분거가족 결정과 유지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4), pp.107-133.
- 김혜성. (2014). 고독사. 한국의 고독사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향에 대한 모색.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서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pp.77-95.
- 김혜영, 선보영, 진미정, 사공은희. (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흥주, 이해진. (2012). 한국의 먹거리 보장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 32(2), pp.468-499.
- 남춘호. (2010). 식품불안정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과 식품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18(2), pp.19-46.
- 노명우. (2014). 혼자살기와 홀로서기의 사회학적 탐색.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서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pp.1-12.
- 박미정. (2010).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일상생활연구. *보건사회연구*, 30(1), pp.62-91.
- 박정운, 김진희. (2002). 독인가족의 가족복지 욕구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pp.17-31.

- 반정호 (2011). 가구 구성방식의 다양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정책*, 38(1), pp.85-111.
- 반정호 (2012). 일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월간노동리뷰*, 4, pp.55-67.
- 신민경. (2014). 일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재무구조의 특징. *Financial Planning Review*, 7(1), pp.1-24.
- 양정선 (2012). 독신의 선택과 노후준비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pp.123-148.
- 오세영, 김미연, 홍민지, 정해량.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 가정에서의 식품공급안정성과 아동의 영양상태. *한국영양학회지*, 35(6), pp.650-657.
-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 (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pp.229-253.
- 이신숙, 김성희. (2011).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11(1), pp.23-60.
- 이현주, 노대명, 오미애, 전지현, 신재동, 정희선, 등. (2013).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 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희연, 노승철, 최은영. (2011). 일인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46(4), pp.480-500.
- 정경희, 남상호, 정은지, 이지혜, 이윤경, 김정석, 등.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일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정호 (2012).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의 식품 미보장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 연구*, 43(2), pp.31-60.
- 차경욱. (2006). 남성일인가구의 경제구조분석: 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른 비교.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4(1), pp.253-269.
- 통계청. (2012.12.11).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일인가구 현황 및 특성 보도자료.
- 한혜진, 오은주, 정순희. (2014). 1인가구의 주관적 경제인식 및 경제적 노후준비와 재정 만족도 관계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1), pp.173-198.
- Barrett, C. B. (2010). Measuring food insecurity. *Science*, 327, pp.825-828.
- Belcher, J. C. (1967). The one-person household: A consequence of the isolated nuclear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534-540.

- Bennett, J., & Dixon, M. (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U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Campbell, C. C. (1991). Food Insecurity: A nutritional outcome or a predictor variable?. Symposium: Nutritional assessment and intervention. *The Journal of Nutrition*, 121(3), pp.408-415.
- Carter, K. N., Lanumata, T., Kruse, K., & Gorton, D. (2010).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food insecurity in New Zealand and does this differ for males and female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34(6), pp.602-608.
- Chilton, M., & Rose, D. (2009). A rights-based approach to food in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9(7), pp.1203-1211.
- Coleman-Jensen, A., Nord, M., & Singh, A. (2013). *Household Food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in 2012*. ERR-155.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 De Vaus, D. A., & Richardson, S. (2009). Living alone in Australia: Trends in sole living and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live alone. *Academy of the Social Sciences in Australia*.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2001).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 Gundersen, C., Kreider, B., & Pepper, J. (2011). The economics of food in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pp.281-303.
- Huang, J., Guo, B., & Kim, Y. (2010). Food insecurity and disability: Do economic resources matter?. *Social Science Research*, 39(1), pp.111-124.
- Hughes, M., & Gove, W. R. (1981). Living alone, social integration, an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1), pp.48-74.
- Jamieson, L., Wasoff, F., Cunningham-Burley, S., Backett-Milburn, K., & Kemmer, D. (2001). Solo-Living in Scotland: Trends and issues. *CRFR Reserch Briefing*, 1.
- Jiang, L., & O'Neil, B. C. (2007). Impacts of demographic trends on US household size and structur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3(3), pp.567-591.

- Kremmer, D., Anderson, A. S., & Marshall, D. W. (1998). Living together and eating together: changes in food choice and eating habits during the transition from single to married/cohabiting. *The Sociological Review*, 46(1), pp.48-72.
- Loopstra, R., & Tarasuk, V.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banks and household food insecurity among low-income Toronto families. *Canadian Public Policy*, 38(4), pp.497-514.
- Loopstra, R., & Tarasuk, V. (2013). Severity of household food insecurity is sensitive to change in household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among low-income families. *The Journal of nutrition*, 143(8), pp.1316-1323.
- Marquis, M., & Manceau, M. (2007). Individual factors determining the food behaviours of single men living in apartments in Montreal as revealed by photographs and interviews.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pp.305-316.
- Martin-Fernandez, J., Grillo, F., Parizot, I., Caillavet, F., & Chauvin, P. (2013). Prevalence and socioeconomic and geographical inequalities of household food insecurity in the Paris region, France, 2010. *BMC Public Health*, 13(1), pp.486-497.
- Nolan, M., Rikard-Bell, G., Mohsin, M., & Williams, M. (2006). Food insecurity in three socially disadvantaged localities in Sydney, Australia. *Health Promotion Journal of Australia*, 17(3), pp.247-254.
- Quintano, C., & D'Agostino, A. (2006). Studying in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of single person household in four developed countr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2(4), pp.525-546.
- Ramsey, R., Giskes, K., Turrell, G., & Gallegos, D. (2012). Food insecurity among adults residing in disadvantaged urban areas: potential health and dietary consequences. *Public health nutrition*, 15(2), pp.227-237.
- Roiser, K. (2011). Food Insecurity in Australia: What is it, who experiences it and how can child and family services support families experiencing it?.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CAFCA Practice Sheet*, pp.1-9.

- Rose, D., Gundersen, C., & Oliveira, V. (1998).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Food In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No. 156812).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 Shepherd, B. (2012). Think critically about food security. *Security Dialogue*, 43(3), pp.195-212.
- Tarasuk, V. (2001). Discussion paper on household and individual food insecurity. *Health Canada*, 68.
- Temple, J. B. (2008). Severe and moderate forms of food insecurity in Australia: are they distinguishable?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43(4), pp.649-668.
- Wall, R. (1989). Leaving home and living alone: An historical perspective. *Population Studies*, 43, pp.369-389.
- Wu, Z., & Schimmele, C. M. (2005). Food insufficiency and depress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48(4), pp.481-504.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One-person Households

Lee, Hyunmin
(University of Seoul)

Kim, Wook-Jin
(University of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people living alone. To this end, the study used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mploying data from the 8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7.1 percent of the one-person households experienced food insecurity, which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general food insecurity prevalence (2.6 percent) in Korea nationwide. Second, gender, marital status, home ownership and incom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one-person households. Labor force participation was in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while age was only marginally associated. The findings show that people who are of low income, do not own house, and are currently unemployed are most likely to be severely food-insecure; people who experienced divorce or separation from their spouse are suffering not only psycho-emotional distresses but food insecurity, one of the human basic needs. Findings further indicate that men living alone are at a greater risk of food insecurity, which could worsen when they are in economic hardships.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that the present food support programs need to extend outreach efforts to the non-elderly one-person households who are in economic difficulties.

Keywords: One-person Household, Living Alone, Food Insecurity, Basic Rights, Food Support